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

「관광진흥법」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특별관리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1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1. 고 시 명 :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특별관리지역 지정

2. 지정사유

- (부산 대표 관광지로 매해 관광객 증가) 「한국관광 100선」에 6회 연속 선정되고 2025년 약 312만 명이 방문하는 등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매년 관광객 증가 폭이 큼
- (주거지역으로의 관광확대에 따른 주민불편 가중) 지역의 일상을 경험하고자 하는 방문객 증가에 따른 교통, 소음, 쓰레기 문제 등 방문객과의 마찰로 주민 불편 가중
-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시스템 구축) 마을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올바른 관광문화를 정착시켜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광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추진방향)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주민생활권 보호·지속가능한 관광·단계적 관리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세부 조치구역을 설정하여 구역별 관리를 통한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3. 지정구역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감천문화마을 일원 (감천2동 12통 ~ 18통)
- 면 적 : 약 122,200㎡
- 구역설정
 - 특별관리지역 내 관광객 방문시간 및 관광객 탑승차량 통행 제한 조치, 단체지도 판매 등을 추진하기 위해, 주거밀집지역·주거상업혼재지역·관심지역·관광객 탑승차량 통행제한 구역 등으로 구역을 분류하고 공간 특성에 맞는 방문객 관리 방안을 차등적으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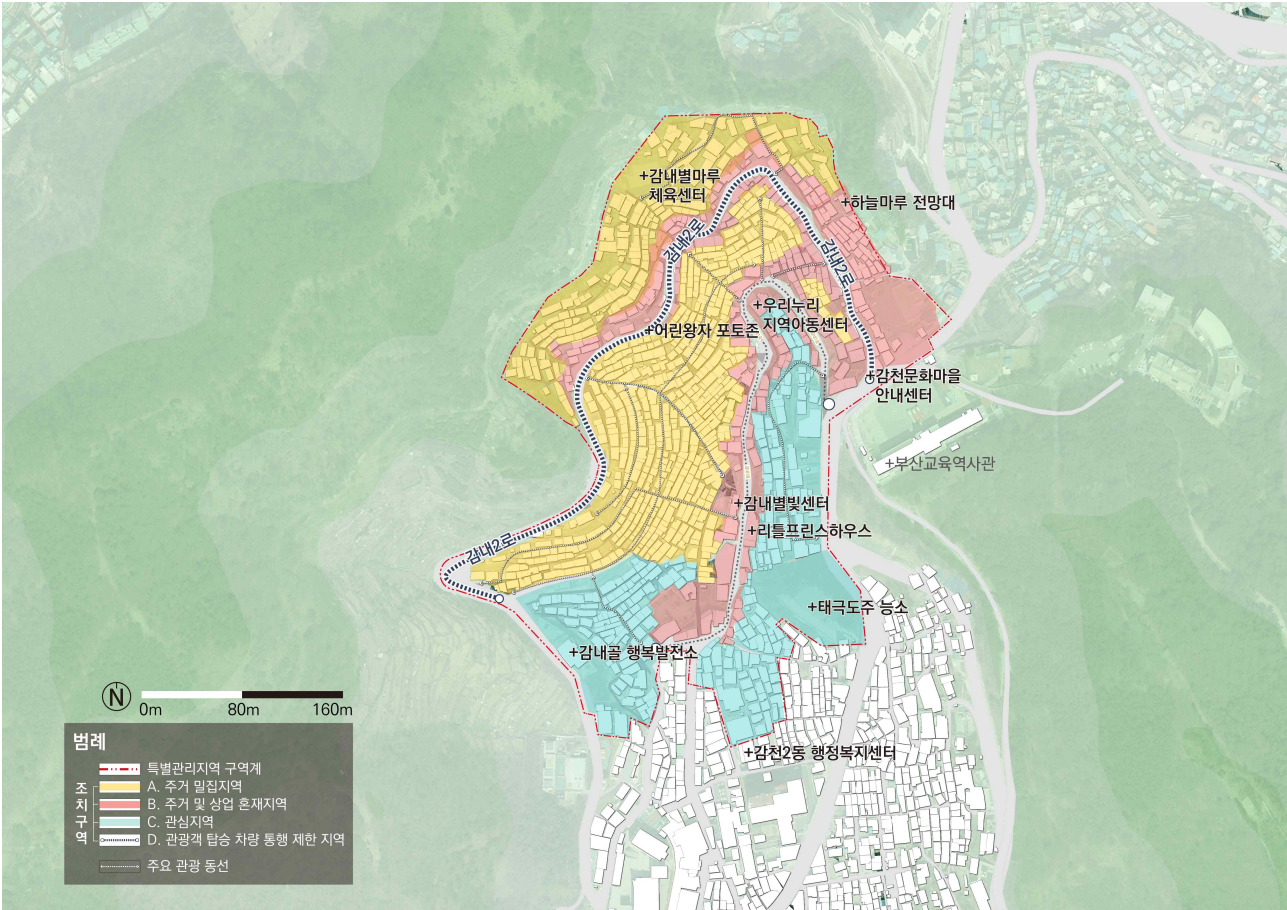
○ 조치구역별 시행시기

구역	조치사항	계도기간	시행시기
주거밀집지역	방문시간 지정(09:00~18:00) 단체(10인이상) 지도 구입 필수 방문 에티켓 안내, 집중 모니터링 실시	2026년 8월~ 2026년 12월	2027.1.1.
주거·상업 혼재지역	방문시간 제한 없음 단체(10인이상) 지도구입 필수 방문 에티켓 안내, 집중 모니터링 실시		
관심지역	단체(10인이상) 지도구입 필수 모니터링 실시		
관광객 탑승차량 통행 제한지역	관광객 탑승차량 통행 제한 ▷제한시간 : 09:00~18:00	2026년 8월~ 2027년 12월	2028.1.1.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단체(10인 이상) 지도 구입 필수’ 조치는 지정고시일부터 즉시 시행

** 조치사항, 계도일 및 시행일 변동 시 변경 고시 예정

○ 특별관리지역 지정 구역도



4. 지 정 일 : 2026년 8월 1일

5. 구역별 주요 조치사항 및 관리방안

구역	항목		주요 조치사항 및 관리방안
A 주거 밀집지역	방문시간 지정	●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18:00 ~ 익일 09:00)
	과태료 부과	×	마을지킴이를 통한 방문시간 계도 및 안내 시간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 시행 후 모니터링 결과 필요시 과태료 부과 검토
	단체지도 구입	●	10인 이상 단체관광객 지도구입 의무화 - 안내센터 현장판매 또는 감천문화마을 홈페이지 예약판매 - 기존 1인 1부 2,000원 (2027. 1. 1. 3,000원 변경 예정)
	집중청소	●	마을지킴이(환경정비) 투입을 통한 마을환경 관리
	순찰	●	마을지킴이(포토존 질서 관리 및 에티켓 계도) 투입
	안내판	●	특별관리지역 지정 종합안내판 설치
	모니터링	●	지속적인 방문객 현황 및 실태 파악
B 주거 및 상업 혼재지역	방문시간 지정	×	방문시간 지정 없이 방문 에티켓 안내 및 계도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미부과
	단체지도 구입	●	10인 이상 단체관광객 지도구입 의무화 - 안내센터 현장판매 또는 감천문화마을 홈페이지 예약판매 - 기존 1인 1부 2,000원 (2027. 1. 1. 3,000원 변경 예정)
	집중청소	●	마을지킴이(환경정비) 투입을 통한 마을환경 관리
	순찰	●	마을지킴이(포토존 질서 관리 및 에티켓 계도) 투입
	안내판	●	특별관리지역 지정 종합안내판 설치
	모니터링	●	지속적인 방문객 현황 및 실태 파악
C 관심 지역	방문시간 지정	×	마을 에티켓 계도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미부과
	단체지도 구입	●	10인 이상 단체관광객 지도구입 의무화 - 안내센터 현장판매 또는 감천문화마을 홈페이지 예약판매 - 기존 1인 1부 2,000원 (2027. 1. 1. 3,000원 변경 예정)
	청소	▲	필요시 마을지킴이 투입
	순찰	▲	필요시 마을지킴이 투입
	안내판	●	에티켓 안내판 설치 및 보수
	모니터링	●	지속적인 방문객 현황 및 실태 파악
D 관광객 탑승차량 통행제한 지역	관광객 탑승차량 통행제한	●	관광객 탑승차량 통행제한 시간 : 09:00 ~ 18:00 마을지킴이 활용 단속 및 계도
	과태료 부과	●	관광객 탑승차량 통행제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시행일 : 2028. 1. 1. 계도기간 : 2026. 8. 1. ~ 2027. 12. 31.

□ A 주거 밀집지역

○ 구 역 : 감천문화마을 내 주거 밀집구역 (약 48,000㎡)

○ 지정 사유

- 주민 상주 비율이 높고 보행로가 협소하여 관광객 유입 시 사생활 침해,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 정주환경 훼손 및 민원 발생이 가장 심각한 구역

○ 세부 관리사항 : 집중청소 및 순찰, 안내판 설치, 모니터링

단체지도구입	방문시간지정	과태료부과	집중청소	순찰	안내판	모니터링
○	○	X	○	○	○	○

○ 주요 조치사항

- 야간 정주권 보호를 위한 방문시간 제한 및 10인이상 단체관광객 지도 구입의무
 - 방문 허용시간 : 09:00 ~ 18:00 (단,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제재는 현 단계에서 제외)
- 마을지킴이를 현장에 집중 배치하여 지정 외 시간 방문 제한 계도 및 사생활 침해 행위 차단을 위한 순찰 강화 및 쓰레기 상습투기 구역 집중청소



□ B 주거 및 상업 혼재지역

○ 구 역 : 감내1·2로 변에 형성된 주요 상업·관광 중심지 (약 30,000㎡)

○ 지정사유

- 마을을 관통하는 주 관광 동선으로, 주민 주거 공간과 관광 상업 시설(카페, 공방, 기념품점 등)이 밀집·혼재된 구역
- ‘방문시간 제한’과 같은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방문 에티켓 제도 및 환경정비 중심의 관리를 통해 정주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균형 관리 도모

○ 세부 관리사항 : 집중청소 및 순찰, 안내판 설치, 모니터링

단체지도구입	방문시간 지정	과태료 부과	집중청소	순찰	안내판	모니터링
○	X	X	○	○	○	○

○ 주요 조치사항

- 10인 이상 단체관광객 지도구입 의무화
- 안내센터 현장판매 또는 감천문화마을 홈페이지 예약판매
- 마을지킴이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관광 동선 내 방문에티켓 집중 제도, 상시 순찰 강화 및 쓰레기 상습투기 구역 집중청소
- 특별관리지역 지정 안내판 설치 및 민원 증감 추이 모니터링 지속



□ C 관심지역

○ 구 역 : 관광 중심지는 아니나 주요 관광 동선과 인접한 완충 지역 (약 40,200㎡)

○ 지정사유 및 관리방향

- 유동 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선제적 모니터링과 예방적 관리가 필요한 구역
- (단기) 통행·방문 제한 조치 적용을 제외하되, 집중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장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규제 필요성 입증 시,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 절차를 거쳐 조치구역으로 격상·지정

○ 세부 관리사항 : 집중청소 및 순찰, 안내판 설치, 모니터링

단체지도구입	방문시간 지정	과태료 부과	집중청소	순찰	안내판	모니터링
○	X	X	○	○	○	○



□ D 관광객 탑승 차량 통행제한 지역

○ 대상구역 : 감내2로 일원 (안내센터입구 ~ 추억의그림자 포토존 약 1km 구간)

○ 지정 사유 및 관리 방향

- 감천문화마을 내 주 관광 동선인 감내2로 구간의 유동인구 급증에 따른 교통 혼잡, 차량 정체 및 상시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특정 시간대 관광객 차량 통행을 전면 제한하고, 양방향 현장 인력 배치 및 단속 실시
- 관광객 대상 사전홍보 및 안내체계를 강화하여 주민 생활권 보호와 올바른 관광문화 조성을 유도

○ 제한내용 : 구역 내 관광객 탑승차량 통행제한

- 예외차량 : 긴급·재난 대응 차량,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 등 제한적 허용

○ 제한시간 :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 관리방안 : 양방향 종점 마을지킴이 배치 및 위반 시 과태료 처분

○ 주요 조치사항

- (통행·법적 조치) 제한시간(09:00~18:00) 내 구역 진입 관광객 차량 통행 제한 및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시행
- (안내설치) 사전 안내판 및 현수막 설치, 진입 차량 상시 통제 및 우회 안내



6. 과태료 부과·징수

○ 관광객 탑승차량 통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

- 「관광진흥법」 제48조의3 제7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예정

7.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하여 사하구 관광진흥과(☎051-220-5922)에 관계 서류 비치 및 열람